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

검토보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5. 2. 14

나. 회부일자 : '95. 2. 14

3. 제안이유

-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도간 협의 추진해야 할 광역행정 업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 광역행정 사무의 합리적인 협의추진기구로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구 성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개 시도)
- 기 능 : 도시계획수립,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등 광역행정 사무전반을 협의 추진
- 협의방식 : 구성 자치단체장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
- 회의개최 : 정기회 년 2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5. 검토의견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검토한 바

이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도간 협의 추진하여야 할 광역행정업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안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충청권 행정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성에 있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개 시·도로 하였으며

둘째, 조직에 있어서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로 하고 회장은 시도 직제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였고

셋째, 기능으로는

-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
-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시·도 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등 교통망에 관한 사항
-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등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의 설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물의 유통·판매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금강유역개발 및 이용,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기타 광역행정 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등을 협의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협의 방법으로는

협의 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다섯째, 회의에 있어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2회,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하는 것으로 하는등 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규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첨 부

- 대전·충청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